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이렇게 주고 받아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②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나 영수증 교부대상에는 해당됩니다.

- ① 택시운송·노점·행상·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 ②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③ 과세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또는 폐업시 잔존 재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단,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 ④ 수출하는 재화(내국 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한함)
-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사업 중 다음의 것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공급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한함)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일반여행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 및 해외취업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마목에 해당하는 재화
- ⑥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다만, 당해 비거주자로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 ⑦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안내 ②



글 / 임 현 석 세무사

4. 세금계산서의 보관

-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그 거래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공급자 보관용을 분실하였으면 장부 등을 근거로하여 사본을 다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분실하였으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합니다.

5.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수룩요령”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나 거래금액 등을 잘못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모두 전산 입력하여 제출누락이나 오류내용을 사후 확인하고 있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전에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

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 수정해야 할 거래처에 한하여 당초에 작성한 거래처별 거래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거래처가 수정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해서 기재합니다.
- 거래처별 거래금액의 수정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합계내용이 변경되면 동일한 요령으로 정정합니다.

6.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신용카드 매출전표란?

-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발행한 매출전표를 말하며, 여기에는 직불카드에 의한 영수증도 포함합니다.
-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 사실이 상호 확인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통한 근거리과세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외에 세법상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증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경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일정범위의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만 필요경비(손급)로 인정



세무상담

2.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혜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창고업과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억2천5백만원)미만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소매업
- ②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 ③ 숙박업
- ④ 목욕·이발·미용업
- ⑤ 여객운송업
-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⑦ 변호사업·해사보좌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행정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다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 ⑧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
 -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 부동산 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 서비스업
 - 가사 서비스업
 - 일반 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경감

○ 소매업·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영수증을 포함)발행에 의한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이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50%를 초과하면 다음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text{경감세액} = \text{납부세액} \times \frac{\left(\text{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right) - \left(\text{직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right)}{\text{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times 50\%$$

○ 다만, 앞에서 설명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납부세액 경감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혜택

☞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그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일 경우에는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20% 또는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 그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표 1> 가산세의 부과

가산세의 종류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
세금계산서 불성실	· 세금계산서 미교부 · 기재불성실, 사실과 다른 경우	- 해당 공급가액의 · 법인 2%, 개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미제출 ·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기재 (세금계산서에 의해 착오기재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 예정신고시 미제출하고 확정신고시 제출(지연제출)	- 해당 공급가액의 · 법인 2%, 개인 1% - 해당 공급가액의 · 법인 1%, 개인 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기재(세금계산서에 의해 착오기재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 공급가액 과다기재	- 해당 공급가액의 · 법인 2%, 개인 1%

☞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접대비 지출 증빙으로 인정

- '99. 1. 1 이후 부터는 5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갖추지 아니하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중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만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업무 불성실시의 불이익

세금계산서 관련업무 불성실의 경우

-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이와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의 부과

- 표 1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부과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후(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 포함)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과세관청의 경정시에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한 때에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립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세금계산서 교부 방해

-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는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 자료상

- 실물 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 2년 이하의 징역

·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립니다.

신용카드 관련 의무 불성실의 경우

○ 사업자가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1.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처벌

○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도록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등 「신용카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세법상 세금혜택의 배제 및 가산세 부과

○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게 되면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 세법상 주어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 일반과세자가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 관련 점대비 지출에 대한 필요경비(손금)도 부인받게 됩니다.